

##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(안)

의안  
번호

210

제출년월일 : 1997년 4월 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제정이유

현재까지 민간의뢰의 비료, 농약등에 관한시험을 농촌진흥청 시험·분석위탁규칙에 의해 수행하여 왔으나 1997년 이후부터 지방직화됨에 따라 도농촌진흥원에서도 농업에 관련된 시험 및 분석·검정에 관한조례를 제정하여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함.

### 주요골자

- ①시험·분석 및 검정에 관한 용어정의와 시험의뢰 절차, 시험기간을 정함(안 제 1, 2, 3, 4조)
- ②시험등에 대한 업무절차와 시험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, 기구가 진흥원에 없을 경우 의뢰인에게 기계, 기구를 제공할 수 있게 함(안 제5,6조)
- ③시험등의 의뢰를 거절할 수 있는 규정과 임의로 거절할수없도록 함(안 제7조)
- ④시험등을 마친후 결과 통지 및 성적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규정 (안 제8,9조)
- ⑤시험분석 및 검정의뢰자가 결과 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에 대한 결과 표시등의 제한 (안 제10조)
- ⑥시험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및 시험의 의뢰에 대한 경비 납부명시 (안 제11조)
- ⑦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등을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(안 제12조)

### 제정조례(안) : 별첨

###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: 별첨

##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·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촌진흥원(이하“진흥원”이라 한다.)에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험·분석 및 검정(이하“시험등”이라 한다.)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시험”이라 함은 농업기술, 작물, 원예, 축산 등과 관련된 물질 또는 물품의 성질, 능력, 변화 및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·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.
2. “분석”이라 함은 그 물질 또는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.
3. “검정”이라 함은 농업용 기자재의 구조, 성능 및 안전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사·측정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시험 등의 의뢰) ①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시험등을 하고자하는 대상물품을 충청북도농촌진흥원의 장(이하“진흥원장”이라 한다.)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물품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시험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자가 시험경비를 납부한 날부터 20일이내
  - 2.분석 및 검정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신청서를 제출할 때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등의 의뢰자는 자체시험성적서(국내외의 예비시험성적을 포함한다)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.

제4조(신청기간)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 및 검정의 의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.

②시험의 의뢰는 시험목적, 처리기간 및 작물재배시기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에 한하여 신청할수 있다.

- 1.여름작물은 11월 1일~12월 15일, 겨울 작물은 6월 1일~7월 15일
- 2.작물재배시기와 관계없는 시험은 제1호의 시기 및 2월 1일~2월 말일과 8월 1일~8월 31일

제5조(시험 등의 업무처리절차)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등의 의뢰신청을 받은 진흥원장은 [별표1]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계·기구의 제공 및 반환) ①진흥원장은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·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기계·기구를

제공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기구를 제공받은 진홍원장은 시험등이 끝난 즉시 기계·기구를 의뢰자에게 찾아가도록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의뢰자로부터 제공받은 기계·기구를 사용하여 시험 등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결과통지서에 그 기계·기구의 명칭, 제조회사, 제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험 등의 거절) ① 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진홍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절할 수 있다.

1. 시험 등에 인력 및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진홍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
  2. 대상물품의 시험목적 및 성격상 대상작물 재배시기가 부적합할 때
  3. 진홍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 또는 의뢰자가 제공한 기계·기구등으로써 시험 등을 할 수 없을 때
  4. 시험 의뢰자가 제11조 제1항에 수수료 및 제2항에 시험 등에 필요한 경비를 규정된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
- ② 진홍원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시험등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사실과 함께 대상물품을 찾아가도록 의뢰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결과통지) 진홍원장은 시험등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하되,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 평가 후 10일 이내에, 분석 및 검정의 경우에는 분석 및 검정이 끝난 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
제9조(성적증명서 발급) ① 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진홍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 
② 진홍원장은 당해 시험등을 의뢰한 자에게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등의 성적증명서를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험 등을 의뢰한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(시험 등의 결과표시) ①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·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뢰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표시하여야 한다.

② 시험등의 결과표시를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『정부보증』 또는 『검사필』 등의 허위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.

제11조(수수료 및 시험등 경비) ①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[별표 2]의 시험의뢰 수수료는 충청북

도 수입증지로, 분석 및 검정의뢰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 
②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에 [별표 3]의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실시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따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수수료의 면제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